

海女漁場紛糾 調查研究*

- 海女入漁慣行의 實態와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

金 斗 熙 · 金 榮 敦

目 次

I. 序	2. 慶北裁定地區 入漁慣行權 紛糾
II. 海女漁場과 入漁實態	IV. 海女入漁慣行의 性格과 變化
1. 海女作業과 漁場	1. 入漁慣行의 性格
2. 海女の 入漁實態	2. 入漁慣行의 變化
III. 海女入漁慣行의 紛糾實態	V. 要 約
1. 제주도내의 入漁紛糾	

I. 序

海女¹⁾라면 이내 제주도를 연상한다. 제주도에는 2萬 數千의 海女가 있다.²⁾ 이 지구상에 海女가 있는 나라는 韓國과 日本뿐인데, 日本의 경우는 그 海女數가 數千에 불과하고 韓國 海女の 거의가 제주도에 몰려 있으므로 海女라면 한결같이 濟州海女에 焦點을 둔다.

*本研究는 1981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한 것임.

- 1) 海女를 潛嫂·潛女라고도 하며, 水産業法上으로는 裸潛漁業者라고 한다. 英語 表記로는 women divers, diving women, sea women, diving female, female divers, Haenyu 등 가지각색이다.
- 2) 제주도의 海女數가 얼마인가에 대한 精確한 集計는 되어 있지 않다. 濟州道나 水産業協同組合 濟州道支部의 통계로는 근래 1萬쯤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漁村契 契員數 가운데 女契員만을 집계한 결과다. 海女를 포함한 漁民들로서 漁村契 加入率이 저조하다는 점과 한 집안에 海女·몇분이 있을 경우에도 보통 家口當 한분만이 契員으로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海女數는 漁村契의 女契員數의 2倍 내지 2.5倍에 이를 것으로 본다. 水産業協同組合 濟州道支部의 <1981年度 業務計劃報告>에 따르면 組合員 總數 13,680名에 女組合員數는 11,246名이니 이의 2倍 내지 2.5倍라면 22,492名~ 28,115名으로서 약 2萬數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도는 그 自然・歷史・言語・社會・習俗・信仰・生業 등의 固有性으로 말미암아 그 異國의 情趣가 두르러지다. 그 異國의 情趣는 四面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넓은 海域에서 특수한 漁業形態로써 裸潛漁業을 하는 強力한 生活戰士인 海女가 있음으로써 한결 질게 드러난다. 연약한 여자들로서 거친 파도와 싸워 나가는 海女の 존재는 너무 異色的이기 때문에 國內外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제주도의 마을은 대부분 해안을 뱅 돌아가며 이루어졌고, 해안 마을마다 그 수가 많은 적은 海女들이 있다. 이 海女들은 한결같이 제주도 수산업의 중추를 이루어 왔다. 그 海女數가 제주도 水産人口의 3분의 2에 이르는가 하면, 海女들에 따른 所得은 總漁獲高의 절반쯤을 늘 확보해 왔다.

자칫 이들은 오로지 海女作業만을 하면서 지내는 듯 보이지만은 실은 그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 따위를 兼業하는 비율은 무려 95%에 이르고 있으므로 純海女作業만 치르며 지내는 海女란 극히 드물다.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 사이, 물때에 맞춰서 뜻에 따라 바다에 나가 작업한다. 따라서 제주도 농어촌에 있어서는 그 이웃이 海女作業을 하든 말든 그리 대견스럽거나 돋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일 따름이다. 또한 海女들에게는 특수한 血統이 있는 것도 아니다.³⁾

濟州 海女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했던 게 아니라, 19세기만부터 本土 각연안을 비롯하여 日本 여러곳과 遼東半島의 大連, 山東省의 靑島에도 出稼했었다는가 하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도 나갔었다. 지금도 本土에는 일부 出稼한다.

근래 産業社會의 급격한 改變으로 말미암아 海女數는 나날이 줄어들어 간다. 어린 소녀들이 해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큰 이유다. 그 激減趨勢의는 반비례해서 海女에 대한 관심도와 研究熱은 나날이 드높아 간다. 물론 이제까지도 海女調査研究는 띄엄띄엄 이루어져 왔으나,⁴⁾ 그 작업이 總括的 立體的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3) 濟州海女들이 특별히 潛水作業에 적합한 遺傳的 素質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은 美國의 이름난 과학잡지인 'Scientific American' 1967년 5월호에 발표된 바 뉴욕주립대학 교수 Hermann Rahn박사와 연세대학교교수 洪碯基博士 共同執筆인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깊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작업할 수 있는 超人的 能力은 오로지 訓練과 經驗에 따른다고 보면서 遺傳的 素質을 부인하고 있다.

4) 海女研究의 主要論著는 다음과 같다.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改正版 1973)

○金榮教; 「海女の 漁撈方法」, 「國文學報」 제 3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0.

○金榮教; 「해녀의 수익침해」, 「제주대학 논문집」 제 2집, 제주대학, 1970.

○金榮教; 「濟州島海女研究序說」, 「省谷論叢」 제 1집, 省谷學術文化財團, 1970.

○金榮教;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1971.

海女數가 나날이 줄어드는 오늘이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立體的 調查研究는 꼭 시급한 실정이다. 海女 調查研究는 그 범위가 넓다. 海女 作業實態와 온갖 習俗을 통틀어 民俗學的 側面, 勞動生産性을 대상한 經濟的 側面, 그 生理와 特有疾病을 둘러싼 醫學的 側面을 내세울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부르는 海女노래를 분석하는 口碑文學的 側面 내지 音樂的 側面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그들의 權益 및 入漁慣行과 漁場紛糾를 문제삼을 때에는 法學的 側面에서의 照明이 있을 수 있다. 어느 側面으로 接近했든 그 考究들은 서로 密着된다.

여기서는 海女들의 入漁慣行과 그 紛糾를 다루려고 한다. 이에 대한 調查研究는 별로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주도 漁村部落에서의 海女들의 入漁慣行의 實態를 조사하여 入漁의 現象形態를 밝히고 慶尙北道 九龍浦·良浦·甘浦 三箇水協管内 第一種共同漁場의 入漁慣行權을 둘러싼 그 概要를 살피려 한다.

편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의 調查對象地域은 다음의 5 개마을로 한정했다. 漁場紛糾가 심했던 마을(①②③)과 그 紛糾가 거의 없었던 마을(④⑤)을 택했다.

- ① 北濟州郡 輪京面 龍水里
- ②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
- ③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牛島, 소섬)
- ④ 北濟州郡 涯月邑 涯月里
- ⑤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이 考究는 물론 法學的 側面에서의 照明이 主宗을 이루겠지만, 海女の 習俗全般과 慣行에 터전하기 때문에 民俗的 研究가 결든다. 이 考究는 海女研究의 주요한 課題로서 海女들의 權益 및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慣習法 考究 및 濟州研究와 女性 研究에도 기여할 것이다.

-
- 金榮教; "海女노래와 海女,"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1977.
 - 高翔龍; 「韓國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7.
 - 李京男; "濟州島海女の 勞動生産性 實態", 「제주도」 통권 34호, 제주도, 1968.
 - 養治明; "濟州島人, 特히 海女를 中心으로 한 骨盤計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53.
 - 李鍾璣; "韓國海女の 末梢部 體熱 發散量과 血流量과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航空醫學」 제 15 권 1호, 1967.
 - 閔京姬; "韓國海女の 歷史 및 生活實態", 「梨大史苑」 5, 1964.
 - 稻田菊太郎; "濟州島潛女集落(一)", 「阪南論集」 第 9 卷 3號, 阪南大學, 1973.
 - 稻田菊太郎; "濟州島潛女集落(二)", 「阪南論集」 第 1 卷 3號, 阪南大學, 1976.
 - 田邊 悟; "濟州島の海女にみられる民俗の類似性", 「日本民俗學」 91號, 日本民俗學會, 1975.
 - Cho, Haejoang,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1979. Ann Arbor, Michigan U.S.A. London, England.

II. 海女漁場과 入漁實態

1. 海女作業과 漁場

海女들의 入漁는 漁場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入漁慣行을 논의하려면 이에 앞서 우리는 海女作業과 漁場과의 상관을 살필 필요를 느낀다.

漁場은 海女들로서는 발의 延長이다. 농사를 짓는 물의 발만이 발이 아니라, 漁場 또한 발이다. 海女들로서는 물의 발과 바다로서의 발이 있는 셈, 그러니까 작업하는 바다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살살이 잘 알고 있다. 바다는 그들로서는 오직 生活道場일 따름이다. 일반인들이야 바다라면 거친 怒濤가 일고 배나 떠다니는 異色境이라 觀念하면서 畏敬마저 느끼는 터이지만, 海女들로서는 生計를 위한 作業場이라는 게 第一義的 觀念이다. 따라서 물의 地境마다 이름이 따르듯 바다에도 곳곳에 이름이 붙는다. 물속에 온통 잠겼거나, 그 일부가 水平 위에 솟은 暗礁, 곧 '여'만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이 붙여졌다. 예 들 어 소섬(牛島,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해안 일대에 흩어진 여만 하더라도 두드러지게 이름이 드러나는 게 40여곳에 이른다.⁵⁾ 이처럼 여마다 일일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生活과 密着되어 관심이 짙음을 드러내며 낮 익은 生活道場이란 말이 된다. 海女노래에서 역시 바다를 집안처럼 관념하는 내용은 적잖다. 海女들은 실로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고 놀고겔랑 어머닐 삼아서”⁶⁾ 바다에서 산다. 다시 말하거니와 바다는 발이나 다름없는 作業場 그것인 것이니 바다에서 부딪는 온갖 일이 家庭의 일로 둔갑한다. 海原을 모질게 불어젖히는 바람은 海女들의 밤이요, 물결은 그들의 집안이다. 물결만이 아니라 물마루 끝까

5) 소섬연안에 흩어진 여 가운데 이름이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여·쟁반여·솔밭여·목갈라진여·섬여·옷따는여·싸트랑여·등굽은여·꿀정여·사너튼여·만여·튼여·삼옷돌여·손지고서방여·고등여·진개여·진여·방언여·목시터여·집여·한장여·대창여·개창여·쟁반여·노랑여·앞튼여·새비여·새비튼여·앞여·큰여·작은여·난여·고분여·한참봉여·바당여·숨은여·튼여·동굴랑여·개도맹이여·오다리튼여·똥내미여·넙대기여

6) 똥양으랑 집을 삼앙
 늦고겔랑 어머울 삼앙
 요바당에 날 살아시민
 어느 바당 걸릴 핵 시라

(金榮教; 「濟州島民謡研究上」 816번의 해녀노래)

< 語釋 >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아
 놀고겔랑 어머닐 삼아
 요 바다에 내 살았으면
 어느 바다 걸릴 리 있으라

지 뻗쳐진 바다 또한 海女들의 집안이다. 7)

海女들에게는 海圖가 머리속에 쫘리 그려져 있다. 어디쯤 가면 그 海底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으며 岩礁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물결은 어느 만큼 거센가를 썩 잘 기억하는가 하면, 소라 전복이 어떻게 잡히리라는 것쯤을 잘 짐작한다. 이는 마치 물에서 모든 地境의 形狀과 肥沃度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濟州도를 떠나 본토로 出稼하는 뱃길에서 그 거쳐야 할 지점 역시 일일이 노랫속에 담는 경우도 본다. 8) 城山日出峰에서 출발하여 본토로 出稼하는 과정의 섬과 바다 이름을 그들은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다는 근거다.

濟州 海女の 活動舞臺는 濟州 沿海에 국한하지 않고 東北亞細亞 4個國 漁場까지 뻗쳐왔다. 濟州 海女들은 19세기말부터 釜山, 東萊, 蔚山 등지에 出稼하기 비롯해서 本土 各沿海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는가 하면, 日本 각처와 中國(靑島·大連)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했었다. 濟州 海女の 行動半徑은 실로 東北亞細亞 일대에 뻗쳐왔다. 本土 南海岸에는 風船을 타 나갔었는데 그들은 억세게 櫓 저으면서 海女노래를 불렀다. 東北亞細亞 일대의 바다가 濟州 海女들에게는 그대로 마당이요 밭이요 들판으로 관념되어 왔다.

- | | |
|---------|--------|
| 7) 넋뭉이랑 | 밥으로 떡곡 |
| 구름으로 | 똥을 싸곡 |
| 물결이랑 | 집안을 삼앙 |
| 실문 어멍 | 매여 두곡 |
| 실문 아방 | 매여 두곡 |
| 부모동생 | 이별하곡 |
| 한강바당 | 집을 삼앙 |
| 이 업을 | 하라 하곡 |
| 이내몸이 | 탄생하든가 |
- (金榮教; 앞의 책, 870번의 해녀노래)

- | | |
|-------------|--------|
| < 語釋 > 바람일랑 | 밥으로 먹고 |
| 구름으로 | 똥을 싸고 |
| 물결일랑 | 집안을 삼아 |
| 실은 어머니 | 매어 두고 |
| 실은 아버지 | 매어 두고 |
| 부모동생 | 이별하고 |
| 한강바다 | 집을 삼아 |
| 이 업을 | 하라 하고 |
| 이내몸이 | 탄생하던가 |

- 8) 예 들어 金榮教의 「濟州島民篇研究上」 874번의 海女노래에 보면, 城山日出- 소완도- 완도- 신기도영- 금당아- 큰바당- 지누리대섬- 나라도- 뽕돌바당- 돌산- 솔치바다- 노랑목- 사랑도바당- 물파랑것도- 지계장심포- 가다동곳- 등바당- 다대곳- 등이 노래 한편 속에 쏟아져 나온다.

濟州 海女들은 바다에 목숨을 건다. '저승길이 오라가라하는'⁹⁾ 바다에서 '七星板을 타고 다니며 銘旌布를 이어 사는'¹⁰⁾ 決死的 作業에 投身한다. 이들에게는 일의 즐거움도 따르지만, 그 辛苦 또한 萬狀이다. 世宗時의 濟州 按撫使 奇慶의 일화를 한 예로 들자. 그가 島內 巡視中 어느 해안에 이르렀을 때 雪寒風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임에도 裸潛하는 海女作業이 너무 異色的이었다. 驚嘆을 금할 수 없었던 그는 어찌 저리도 고생스리 採取하는 海產物을 내가 차마 먹겠는가고 끝내 먹기를 사양했다는 이야기는 紀念碑的 逸話다. 그들의 苦役과 嗣氣는 朝鮮朝 正宗朝人 申光株의 《石北集》에 드러나는 〈濟州潛女歌〉에 노래되었는가 하면, 李健의 《濟州風土記》, 趙觀彬의 《悔軒集》 등에도 어련히 기록되어 있다.

海女들이 貝類, 海藻類를 채취하는 바다, 곧 海女漁場은 裸潛漁場, 혹은 第1種共同漁場이라 한다. 第1種共同漁場이란 水産業法 施行令 제11조 2항에 따르면 最干潮時 水深 10미터 이내 (海藻刈引網漁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 m 이내)의 水面을 말한다.

漁場은 海女들의 生命源이다. 따라서 이들은 海女漁場을 소중히 가꾸면서 不當한 侵犯에 대해서는 이에 맞서 물러설 줄 모른다.

第1種共同漁場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하여 海女마을에서는 해마다 개뉘기작업을 벌인다. 쓰잘데 없는 雜草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른바 '바당풀 캔다'고 일컫는다. 그리고 어찌다가 管內海岸에 屍體가 떠오를 경우면 이내 처리해야만 한다. 정해진 海女漁場에서 貝類와 海藻類를 채취할 권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이 두가지 義務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所管漁場의 屍體處理를 의면함으로써 慣行에 따라 바다를 잃고 入漁權을 이웃마을에 넘겨줬던 예는 드물지 않다.

- 9) 너른 바당 앞을 제어
 흔길 두길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다갓다

(金榮教; 앞의 책, 822 번의 해녀노래)

〈語釋〉 너른 바다 앞을 제어
 흔길 두길 들어가니
 저승질이 오라가라

- 10) 탕 땡기는 칠성판아
 잉잉 사는 멩정포야
 못할 일이 요 일이어
 모진 광풍 불질 말아

(金榮教; 앞의 책, 833 번의 해녀노래)

〈語釋〉 타 다니는 七星板아
 이어 사는 銘旌布야
 못할 일이 요 일이네
 모진 狂風 불질 말아

馬羅島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할망바당>이 있어서 60세 이상의老婆와 病弱者들만이 入漁할 수 있는 漁場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도 異色的이다. 自生的 慣行에 따르는 漁場 劃定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거니와 馬羅島의 島主格인 班長에게는 <반장바당>을 따로 劃定해 줌으로써 그 勞苦에 보답하고 있다. 이런 入漁慣行은 펍 흥미있는 過程을 던져 준다.

海女漁場은 마을 단위로 나누어져 있음이 보통인데 가끔 洞別로 劃定되기도 한다. 예 들어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한 마을로 되어 있는 소섬(牛島)의 경우, 바닷가를 땡 둘러가며 이루어진 聚落들이 11個洞인데, 각각 洞別로 漁場이 나누어졌다. 漁場이 워낙 넓은 위에다가 海産物이 풍부하기 때문에 洞別로 漁場이 나누어졌음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舊左邑 下道里의 漁場 역시 넓은 편이어서 洞別로 나누어지는 등 洞別로 나누어진 마을들도 더러 있다.

그 區劃線은 물과 달라서 確然한 것일 수 없다. <곶>이라 불리는 區劃線은 해안에 있는 岬(岬)과 바다에 있는 여와를 잇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기 쉬운 바위를 기준하여 直線으로 그어 劃定하기도 한다. 그 境界基點에 알맞는 岬(岬)도 유다른 바위도 없을 경우에는 바위 위에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그 區劃基點을 삼기도 한다.

漁場의 境界設定이 純慣行에 터전할 뿐더러, 그 境界가 가다가 不明確하고 境界設定理由가 妥當치 않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이의 不當性이 드러나 말썽을 불러일으킨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漁場紛糾이 일어나고 동네와 동네 사이에서도 紛爭이 생긴다. 漁場은 海女들의 生命源이요 海女收益은 도민생활에 큰 비중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가다가 그 漁場紛糾은 심각한 국면에까지 이르는 일이 있었다.

2. 海女の 入漁¹¹⁾ 實態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共同體的 觀念이 짙게 작용된다. 共同漁場(第1種共同漁場)에서의 入漁는 國家法이나 行政官廳의 간여없이 옛부터 내려오는 부락의 鄉約이나 規約과 같은 慣行 또는 慣習規範에 따라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각부락의 入漁나 漁場秩序維持를 위한 規範은 각각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1962年 4月 1일부터 水産業協同組合法과 同施行令이 制定 施行됨에 따라 어촌부락 단위로 漁村契가 조직 설립되었다. 共同漁業權을 漁村契가 지니게 되었고 따라서 共同漁場에서의 入漁나 漁場의 질서는 性令¹²⁾과 漁村契의 定款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

11) 제주도에서는 第1種共同漁業의 漁場에서의 海女の 漁業行爲를 하는 것을 '入漁'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러한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水産業法 第40條 第1項의 '入漁'는 '慣行에 의한 入漁'라 부르기도 한다.

12) 水産業法 第51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를 取得한 漁業權者는 그 漁業權의 行使 또는 入漁하는 者의 漁業方法, 漁業의 時期, 操業總數, 其他 漁業秩序의 유지를 위한 規程을 정하여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舊來의 鄉約과 같은 慣行이나 慣習과 같은 入漁規範이 排除되고 그 대신에 制定的 法規範에 따라 規律되어 가고 있다.

海女の 入漁形態, 入漁權者, 潛艘會 등 入漁實態에 대하여 간추려 보기로 한다.

2.1. 入漁狀態

共同漁場에서의 海女の 入漁形態를 類型別로 나누면 共同入漁와 自由入漁(俗稱 ‘헛무래’¹³⁾)로 구별할 수 있다.

共同入漁는 共同漁場에서 海녀들이 공동으로 입어하여 貝類나 海藻類를 공동 채취하는 形態다. 共同入漁에도 두가지 形態가 있다. 하나는 구역을 정하지 않고 共同漁場의 全水面에 공동입어하는 形態와 또 하나는 공동어장을 몇개구역으로 나누어 入漁者의 入漁漁場을 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만 입어를 행하게 하는 形態다.

마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는 듯이나 우뚝가사리의 채취, 공동어장내의 養殖漁場의 貝類를 채취할 때에는 共同入漁한다. 툇을 캐기 위하여 입어할 때에는 1가구당 1인만의 입어가 허용되고 그 收益金도 均等分配되지만, 우뚝가사리를 캐 때에도 共同入漁는 하지 않는다. 收益金은 채취자의 개별수익이 된다. 養殖漁場에 있어서의 입어는 1가구당 1인만이 공동입어하여 공동채취하고 공동판매하여 그 收益金을 均等分配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많이 채취한 해녀에게 그 채취량의 2분의 1을 공동분배하고 2분의 1을 개인수익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養殖漁場의 貝類와 共同漁場의 툇, 우뚝가사리를 제외한 공동어장에서의 貝類 또는 海藻類는 자유롭게 입어하여 자유경쟁에 따라 채취하며 그 수익 역시 채취한 자의 개인소득이 된다.

해녀들이 共同漁場에 입어함에 있어서는 그 入漁時期, 入漁方法 등에 대하여 각각 共同體的 規制가 따른다. 해녀들이 입어할 때에는 물론 이 規制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入漁에 대한 規制는 法令¹⁴⁾에 따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漁村契의 入漁內規, 또한 마을의 慣行과 같은 不文律에 따로 규제되는 경우도 있다.

2.2. 入漁權者

共同漁業의 漁業權은 法人漁村契의 경우는 漁村契가 지니며, 法人 아닌 漁村契의 경우는

- 13) “헛(虛)+물(水)+에(處所格助詞)”로 분석된다. 海藻類 採取는 그 採取時期가 정해져 있지만은, 特定期間이 아니더라도 採取하는 貝類 採取를 가리키는 것이다.
- 14) 〇入漁에 관한 行使規程은 道知事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水産業法 第 51 條)
 - 〇전복은 10월 1일부터 翌年 2월 말일까지 採捕하지 못한다. (水産資源保護令 제 9조 9호 但書)
 - 〇7cm 미만의 전복은 採捕하지 못한다. (水産資源保護令 제 10조 제 1항 但書)
 - 〇6cm 미만의 소리는 採捕하지 못한다. (水産資源保護令 제 10조 제 1항 18호 但書)

어촌계의 總有로 한다고 水産業法¹⁵⁾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漁村契員인 海女는 共同漁業權者인 동시에 入漁權者다. 그러나 共同漁業權의 어장안에서 入漁慣行이 있는 자는 漁村契 총회의 의결에 따라 準契員이 되면 入漁權을 얻는다.¹⁶⁾ 따라서 水産業法 제 40 조 제 1 항에 따라 入漁慣行이 있는 자라도 漁村契의 契員 또는 準契員이 아닐 경우는 共同漁場에 입어할 수 없다.

여기서 契員이 아닌 入漁慣行者의 入漁權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촌마을에서의 入漁의 실태를 본다면 入漁慣行이 있는 자의 거의 99%가 契員이나 準契員이 되어 있으므로 入漁慣行을 둘러싼 시비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慣行에 따라 準契員으로서 入漁權을 취득한 자가 다른 마을로 出嫁하거나 轉出하게 되면 당연히 그 入漁權은 상실되고 그 地位를 상속받거나 양도될 수는 없다. 다른 마을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復歸한 자이거나, 60일 이상의 入漁實績이 있는 자가 전입하여 올 경우에도 總會의 決議에 따라 入漁權이 다시 주어진다. 그리고 準契員인 入漁權者는 共同漁場의 管理나 處分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漁村契에서 주어지는 義務는(入漁行使料의 지불, 漁場管理에 必要한 賦役 등)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入漁權은 물론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다가 家口를 단위로 하여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툇 채취를 위하여 입어하는 경우에는 한가구에 몇분의 入漁權者가 있을지라도 한가구당 한분만의 入漁權이 인정된다. 물론 分家했을 경우에는 獨立家口로 보아 새로이 한분의 入漁權이 인정된다.

그리고 漁場의 관리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入漁權者에게 義務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家口를 單位로 하여 할당한다. 이와같이 家口를 單位로 하여 權利 義務가 부여되는 현상은 지난 날부터 내려오는 慣習에 따른 家族的 共同秩序의 規範意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2.3. 潛嫂會(海女會)

제주도 어촌마을에는 마을마다 海女들로 조직된 自生團體인 潛嫂會가 있다. 이 潛嫂會를 마을에 따라서는 海女會라 하기도 한다. 이 潛嫂會는 任意團體이긴 하나 漁村契의 산하단체 이면서도 어촌계가 共同漁場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漁村契는 獨自의 意思決定機關인 總會와 執行機關인 理事會가 있어서 共同漁場의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결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潛嫂會가 漁場의 管理나 秩序의 維持

15) 水産業法 第 24 條 第 1 項, 第 4 項.

16) 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令 第 7 條.

① 前條(第 9 條)의 규정에 의한 契員의 자격이 없는 漁民中 契가 取得 또는 專用한 共同漁業權의 漁場 안에서 入漁慣行이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準契員이 될 수 있다.

② 準契員은 水産業法 第 51 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契가 取得 또는 專用하는 共同漁業權의 어장에 입어할 수 있다.

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潛嫂會의 機能이나 役割은 潛嫂會 스스로 獨者的으로 결정한다. 그 역할을 보면 共同漁場의 入漁時期 및 入漁日時의 決定, 外來轉入者의 入漁資格의 審査決定, 潛水器船의 共同漁場 侵入 防止, 漁場 監視, 種貝撒布作業, 개 닭기사업(雜草除去) 등이다. 그리고 마을에 따라서는 潛嫂會가 우뭇가사리를 獨占 採取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Ⅲ. 海女人漁慣行의 紛糾實態

1. 濟州道內의 入漁紛糾

제주도 연안의 공동어장에 있어서의 入漁紛糾는 어촌마을과 마을 사이의 漁場境界線의 地先水面에서의 入漁權을 둘러싼 분규가 대부분이다.

제주도 연안의 공동어장의 경계선은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졌다. 共同漁場에 입어할 권리를 지니려면 여기에 많은 의무가 따랐다. 그 하나가 屍體處理의 慣行이다. 어쩌다가 境界地先水面에 시체가 떠올라 왔을 경우에는 勞道가 센 마을에서 그 이웃마을에 시체처리를 강요했던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면 그 水面은 이웃마을의 어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行政區域으로서의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선과 공동어장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漁場의 값어치가 드높아져 감에 따라 제 마을의 어장을 가급이면 넓히려는 의욕이 마을 주민들마다 일게 되었다. 곧 공동어장에서 채취하는 톳·미역·우뭇가사리 등의 해산물에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境界水面 漁場에 있어서의 入漁權을 둘러싸고 해안마을 곳곳에서 入漁紛糾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法廷에까지 번졌었던 것이다.

우선 조사자들의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바 翰京面 龍水里와 龍塘里 사이의 분규, 舊左邑 終達里와 城山邑 始興里 사이의 분규 및 소섬(舊左邑 濱坪里)의 분규에 대한 그 대강을 살펴 보려 한다.

1.1. 龍水·龍塘里間의 入漁紛糾¹⁷⁾

원래 龍水里와 龍塘里는 龍水一·二里로 묶여진 같은 마을이었다. 1952년 地方自治法이 시행됨에 따라 龍水里와 龍塘里로 나누어졌는데 각각 200명, 130명의 해녀를 지니고 있는 농어촌이다.

17) 高翔龍; 「韓國의 入漁權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7., pp. 109 ~ 111 參照.

分里는 되었지만은 종전의 慣行에 따라 共同漁場에 대한 入漁는 공동으로 이뤄져 오던 가운데 1966년 전후해서는 龍水·龍塘 두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공동어장의 톳을 밀채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漁場의 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龍塘里에서는 1964년의 改正水産業法에 따라 일괄적으로 면허를 받은 漁場區劃線을 내세우고 區劃線內의 공동어장에 龍水里 海女の 입어를 거절하게 되자 입어분규가 벌어졌다. 漁業協同組合이 관내공동어장을 漁村契의 專用漁場으로 마련한다는 구실이였다.

이 분규는 두마을 사이에 폭력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면당국과 漁協이 조정하려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北濟州郡 調整委員會에서 조정을 거듭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두마을이 공동입어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龍塘里가 하루 먼저 입어하기로 임시조정되었다. 그 調整에서는 龍水里가 俗稱 〈장태코지〉까지 입어했던 실적이 있었으며 〈장태코지〉까지의 共同入漁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龍水里에서는 龍塘里가 共同漁場에 하루 先入漁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도당국에 再調整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후 이 분규는 분규어장에 있어서의 主產物인 미역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감에 따라 자연히 사라져 갔다.

이 분규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漁業免許權者가 共同入漁의 慣行을 확인치 않았을 뿐더러, 두마을 사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漁場區劃線을 책정하여 專用漁場을 면허하여 준 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1.2. 終達·始興里間의 入漁紛糾

마을 이름으로도 공교롭게 드러나 있거니와 北濟州郡은 終達里로써 끝나고 始興里부터는 南濟州郡이 시작된다. 終達里에는 318명의 어촌계원이 있고 그 가운데 여계원수는 296명 이지마는 실제 海女數는 350명에 이른다.

두 마을 사이의 입어분규의 발단은 그 境界地先水面이 썩 풍부한 미역어장이라는 점에 있었다. 곧 두 마을 境界水面에 있는 속칭 〈뒤옹여〉와 〈넓은세베여〉 일대는 훌륭한 미역어장으로서 종래의 관행상으로는 두 마을이 공동입어를 하여 왔었다.

그런데 1964년 3월, 終達里쪽에서 이들 어장이 종달리 경계 안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始興里 海녀의 입어를 거절하게 되자 입어분규가 일어났다. 분규가 격심해지자 제주도당국이 조정하였다. 그 조정내용을 보면 종래의 慣行을 일부 인정하여 이른바 〈뒤옹여〉는 終達里 專用漁場으로 하고 〈넓은세베여〉는 始興里의 漁場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단 해결되었다.

그 후 1970년에 이르러 또다시 두 마을 사이에 입어분규가 일어났다. 黃金漁場인 〈고등여〉를 둘러싼 싸움이었다. 곧 始興里에서의 입어가 인정된 〈넓은세베여〉 곁에 있는 〈고등여〉를 始興里쪽에서는 〈넓은세베여〉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終達里쪽에서는

12 는 문 집

〈넙은세배여〉와는 분리된 終達里의 입어어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이 분류도 제주도 당국의 조정에 따라 해결되었다. 곧, 水中撮影을 해 본 결과〈고등어〉는 〈넙은세배여〉와는 12m나 떨어져 있음이 드러났다. 始興里 쪽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고등어〉가 終達里漁場이라는 데 합의함으로써 분류는 멎었다. 이 분류도 종래의 共同入漁慣行을 부인한 데서 일어났던 것이다.

1.3. 濱坪里의 入漁紛糾

北濟州郡 舊左邑 濱坪里는 城山浦 옆에 있는 소섬을 가리킨다. 제주도내의 대부분의 漁場紛糾가 마을과 마을 사이 境界地先水面의 분류였음에 반하여 濱坪里의 분류는 이 마을 안의 동네와 동네 사이의 분류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濱坪里, 곧 소섬은 섬둘레가 온통 黃金漁場을 이루고 있어서 우뚝가사리에 따른 소득만 하더라도 해마다 엄청나다. 소섬주민들은 그곳 共同漁場을 구역에 따라 나누지 않고 주민 모두가 共同入漁를 하여 왔었다. 그런데 甾·미역·우뚝가사리 등 海藻類의 商品 價値性이 점점 높아져 감에 따라, 소섬의 영일동과 귀일동의 해녀들은 종래의 慣行에 따른 共同入漁를 거부하고 자기 동네의 地先水面에서의 入漁를 獨占하려고 하는 데서 두동네 사이에 분류가 일어났던 것이다.

분류가 극심하여지자 당시 濟州道維新協議會에서 개입, 조정하였다. 甾 채취에 한하여 종래의 공동어장을 4개구역으로 나누고 濱坪里, 곧 소섬의 11개동도 4개조로 나누어 각조의 甾 채취 專用漁場을 區劃 策定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상 몇마을을 통해 본 漁場紛糾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漁場紛糾가 속속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선 社會, 經濟事情의 變化에 따라 從來 漁村마을을 지배해 왔던 共同體的 秩序意識이 회박해져 가고 있는 한 斷面이라 볼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어촌 마을과 마을 사이, 동네와 동네 사이의 入漁紛糾는 거의 사라졌다.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지난날 제주도 어촌마을과 마을 사이의 入漁紛糾는 주로 部落境界 地先水面의 미역어장을 둘러싼 분류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제주산 미역이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는 데 있다. 둘째, 근래에 이르러서는 第1種共同漁業의 免許를 正確한 漁場圖에 따라 하기 때문에紛糾의 素地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2. 慶北裁定地區 入漁慣行權 紛糾

이른바 '慶北裁定地區'란 19세기말부터 제주도 해녀들이 出稼해 오는 慶北道 九龍浦

甘補・良補 3개 水産業協同組合 管内 第一種共同漁場을 말한다.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 연해에서만 入漁했던 게 아니라, 19세기말부터 한반도로 出稼하기 시작했으니, 그 出稼對象地는 釜山・東萊・蔚山 등 경상남도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이들은 어찌하여 고향을 등지고 천리타향으로 出稼하게 되었을까. 제주도 연해에서의 우뭇가사리 등의 채취물은 제한되었는데다가, 한반도에는 그 채취물이 풍성하였으며 이를 채취할 만한 海女들이 그곳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뭇가사리 등 海藻類의 이용도가 불어내면서 釜山 등지를 근거지로 한 海藻商들이 부쩍 불어났고 客主들이 점차 늘어났다. 이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前渡金을 내준다든가, 食料品, 生活必需品 등을 빌려 주면서 해녀들을 끌어갔다.

제주 해녀들은 釜山에서부터 멀리 淸津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일대를 누비면서 北上해 갔는가 하면, 多島海 등 南海 연안과 한반도 각연안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수가 慶尙南道 지방으로 出稼했었으니 그것은 石宙明의 《濟州島隨筆》¹⁸⁾, 舊韓國 農商工部 水產局 편찬의 《韓國水產誌》¹⁹⁾ 및 《1937年度 濟州島勢要覽》²⁰⁾ 등에 구체적으로 들어나 있다.

出稼海女數는 해마다 늘어났고, 해방을 전후하여 慶南 중심의 出稼는 점차 慶北 중심으로 옮겨갔다. 慶北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나가는 出稼海女數는 1950년대에 이르러 무려 5천명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자연히 이들의 權益問題가 절실해져 갔다.

四面環海의 섬이라지만, 제주도 연안에서는 값진 우뭇가사리가 20만근밖에 나지 않은 데 비하여 慶尙北道 같은 데는 이의 4배인 80만근이나 깔렸지만 그곳에는 이를 채취할 만한 해녀들이 별로 없으므로 제주도 해녀들이 예전부터 그곳에 나간다.²¹⁾

수천명에 이르는 제주도 해녀들은 연초마다 제주도를 찾아든 客主한테서 前渡金을 받으면서부터 客主에게 얽매이게 된다. 客主들은 言必稱 最大限의 權益을 보장한다지만 이들 대부

18) 石宙明의 「濟州島隨筆」(1968, p.202)에서 보면, 1915년경의 出稼海女數가 약 2,500명 인데 出稼地別로는 慶南에 1,700, 全南 多島海지방에 300, 其他에 500이라 밝힘으로써 慶南에 가장 많은 수의 해녀가 出稼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9) 「韓國水產誌」 第二輯(隆熙 2年, p.507)에 보면 慶尙南道 蔚山郡 大峴面 城外洞에 제주도 해녀의 來漁가 많다는 기록이 보인다.

20) 「1937年度 濟州島勢要覽」(1937, p.25)에 보면, 제주도 해녀들은 한반도 각연안을 비롯해서 日本, 블라디보스토크, 中國 등의 연안에도 出稼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國內出稼人員 2,801명 가운데 慶尙南道 1,650명, 慶尙北道 473명, 全羅南道 408명, 忠清南道 110명 등의 순서라 함으로써 단연 慶尙南道에 쏠렸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21) 1967년 5월, 慶尙北道 裁定地區에 필자가 出稼海女 조사차 나갔을 때 그 지방 출신의 해녀수가 800명쯤 된다는 말을 그곳 水監 實務者에게서 들은 바 있었지만은 사실여부는 알 길이 없었다. 어쨌든 그곳 출신 해녀들은 그 技倆이 썩 모자랄 뿐더러, 능숙한 海女로서 활동할 나이쯤 되어 혼인을 하면, 해녀작업은 그만두게 되는 실정이었다.

분은 그곳 舊岩主들과 결탁하여 선량하기만 한 제주도 해녀들을 갖은 방법으로 收奪하였다.

水産業法 第 10 條에 따르면 共同漁場 賣買는 엄연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水協에서는 적당한 行使料를 받고 마음대로 舊岩主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흔했다. 客主를 따라간 해녀들은 그들에게 入漁行使料, 漁協手數料, 指導員 手當, 委託販賣手數料, 諸雜費 등의 명목으로 이중삼중 뜯기다 보면 實收益의 몇분의 1밖에 못받는 결과에 이르렀었다. 더구나 여기에는 高價인 우뚝가사리 등에 대한 不正檢斤이 따랐었다.

海女出稼가 있어서 이래, 出稼海女에 대한 權益保護運動은 꾸준히 이어져 왔었지만, 1956년 1월의 慶尙北道 裁定地區에 대한 入漁慣行權의 裁定은 그들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커다란 공헌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 陽南·甘浦·良浦·九龍浦·大浦 각어업협동조합(나중에 陽南漁協은 甘浦漁協에, 大浦漁協은 九龍浦漁協에 각각 흡수되었음) 享有共同漁場 全域에, ② 裸漚의 漁業方法에 따라 ③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④ 天草·銀杏草·桜草·貝類 채취를 위하여 ⑤ 濟州 海女 1,070 명이 입어할 수 있는 慣行을 인정 받기에 이른 것이다.²²⁾

이 裁定은 水産業法 제 69 조에 따른 것이다. 水産業法 第 69 條란 漁場의 區域, 漁業의 範圍, 保護區域, 漁業의 方法 또는 入漁의 慣行에 관하여 紛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水産廳長에게 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裁定書에서 漁場賣買를 금하고 있다. 곧, 共同漁業權 創設의 취지는 水産業法 第 10 條²³⁾에 밝힌 바와 같이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민의 漁業經營上 共同利益을 증진케 함에 있는 것인 바, 그들이 享有漁場의 行使權을 公賣하여 그 行使料만을 징수함을 어업조합 자체의 목적으로 함은 水産業法 第 19 條²⁴⁾에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水産業法 第 40 條 1 項²⁵⁾ 및 同施行令 第 39 條는 通漁者, 특히 裸漚業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慣行者의 入漁制를 인정하는 한편, 漁業權者의 權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제주도 出稼海女들이 그 공동어장내에서 그 원인과 조건(특히 漁業行爲의 결과에 대한 經濟的 價値)여하를 막론하고 여러해 동안 계속하여 入漁를 한 實績이 있으면 이는 곧 入漁慣行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22)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pp.147~153.

23) 水産業法 제 10 조(共同漁業의 免許) ① 共同漁業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漁業者의 漁業經營上 共同利益을 증진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 漁業協同組合(漁村契를 包含한다)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漁業協同組合이 享有하는 共同漁業權의 범위 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다.

24) 水産業法 제 19 조(免許許可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取消)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사실상 當該 漁業의 經營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취소할 수 있다.

25) 水産業法 제 40 조(入漁의 慣行) ① 共同漁業의 漁業權者는 從來의 慣行에 의하여 그 漁業場에서 漁業에 종사하는 자의 入漁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럼으로써 慶尙北道 裁定地區에 있어서는 제주도 出稼海女の 權益이 甚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그들의 權益侵害는 아주 사라질 줄은 몰랐다. 不法으로 漁場 賣買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생산자들의 權益保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갖은 收奪이 이루어졌었다.²⁶⁾

또한 1961년 3월 10일, 제주도의 漁聯 理事長 및 傘下 各漁業組合理事名義로 낸 “慶北 出稼潛嫂 및 漁民各位께 알리는 말씀”에 보면, 密出稼를 삼가라고 강력히 종용하면서 만약 暗引率者에 따라 密出稼했을 경우에는 해녀들의 총수입 가운데 무려 8 할이나 收奪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었다.

慶尙北道側에서도 해마다 裁定地區 중심으로 출가하는 해녀들의 문제가 難題였다. 1967년 5월, 필자가 九龍浦 일대에 출가한 해녀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九龍浦·甘浦·良浦 일대에 출장했을 때 面談 調査해 보았더니 各漁協의 實務者들은 제주도 出稼海女問題가 귀찮은 頭痛거리였음이 확인되었다.²⁷⁾

慶北側에서는 이리하여 慶北裁定地區에 대한 제주 해녀의 出稼를 은근히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드디어 1967년 2월, 甘浦·良浦·九龍浦 漁業組長 名의로 제주도 해녀 1,070 명에 대한 ‘入漁價行權 消滅確認請求訴訟’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소송의 골자로서 入漁價行權은 개개인의 入漁가 이어져 나가야만 유지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만약 入漁가 중단되거나 死亡하였을 때에는 入漁價行은 消滅하는 것이므로 同權利는 讓渡, 賣買 또는 相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해녀들은 入漁價行에 대한 裁定을 받은 수년후인 1959년도 이후 현재까지 그 共同漁場에 入漁한 사실이 전연 없으므로 入漁價行은 消滅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측에서는 제주도 출신 해녀의 共同漁場에 대한 入漁權은 特定個人的 資格이 아니라 ‘濟州 海女’라는 자격에서 入漁權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제주도 출신 해녀는 1,070 명이라는 人員制限에 맞추어 ‘濟州出身海女’라는 자격만으로써 그 漁場 등에

26) 이의 단적인 예로서는 <조선일보> 1959년 6월 22일자 “피땀 흘려 남 좋은 일 : 海女集團告訴事件” 題下의 기사만 보더라도 이내 짐작이 간다. 출가 해녀들은 漁場賣買 등 收奪이 심해지자, 당시 慶北 浦項地方海務廳 관내의 九龍浦·良浦·甘浦·大浦 등의 各漁業組合을 상대로 大邱地方檢察廳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記事다. 金榮教; “海女の 收益侵害”(「제주대학 논문집」제 2집, 제주대학, 1970, p.25) 參照.

27) 첫째 慶北側에서도 最善은 다한다고 하는데 出稼海女の 權益을 둘러싸고 항상 말썽을 빚기 때문에 妙策이 서질 않고 非難을 면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점, 둘째 利害關係가 서로 엇갈리는 當地 漁村契와 出稼海女와의 갈등을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점, 셋째 當地 漁協管內에도 해녀수가 상당히 불어났기 때문에 제주도 해녀가 꼭 必要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 넷째 漁協 指導員 개개인의 잘못은 곧 그곳 漁協 전반의 잘못으로 간주되니 아니꼽다는 점, 다섯째 그곳에서 海藻類, 貝類의 養殖과 개당기에 막대한 노력과 예산을 들여 두면 採取期에는 활락 물러들어 채워해 가는 제주 해녀의 경우는 어찌 보면 ‘不勞所得’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여겨진다는 점 등이다.

입어할 權利가 있는 것이지 개개인이 해마다 입어하여야만 한다는 것도 아님을 주장하였다.

大邱地方法院에서는 被告 金已生 등 3명에 대해서는 그 入漁慣行이 消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과 함께 被告 梁玉順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를 棄却한다고 판결했다. 水産業法 第40條에서 말하는 慣行에 따라 취득하는 入漁權이라 함은 반드시 단체로서 가지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서도 入漁慣行이 있으면 그 개인이 가지는 權利도 말하므로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訴訟은 성립된다면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여 해녀들의 權益을 끝까지 돌보는 한편, 될 수 있는 대로 제주 해녀들이 한반도로 出稼하지 않도록 증용하는 施策을 펴 나갔으니 이른바 '해녀 안 보내기운동'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慶北裁定地區의 漁組 實務者들을 초청하여 허심탄회하게 그 對策을 협의하는 등 政策的 차원에서 그 불씨를 꺼 갔다.

이제는 慶尙北道 裁定地區를 비롯하여 한반도 연해에 나가는 出稼海女數가 썩 줄어들어 간다. 少數이긴 하지만 아직도 韓半島 出稼는 이어지므로 그 權益問題는 그림자처럼 뒤따라다닐 것이요, 이들의 權益保護를 위한 根源的인 對策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IV. 海女漁慣行의 性格과 變化

1. 入漁慣行의 性格

入漁慣行의 性格에 대해서는 두가지 見解가 맞선다. 그 이유는 水産業法 第24條 第2項에 “漁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土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入漁慣行에 관해서는 物權이란 明文規定을 두지 않고 다만 水産業法 第40條 第1項에 “共同漁業의 漁業權者는 從來의 慣行에 의하여 그 漁業場內에서 漁業에 종사하는 자의 入漁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權利이나 法의 反射的作用이나를 놓고 論難이 벌어졌으며 入漁慣行을 둘러싼 入漁紛糾가 제주도와 경상북도 사이에 1950년대로부터 197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入漁慣行의 法的性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入漁慣行의 權利性을 부정하는 見解

이 見解에 따르면 “入漁란 共同漁業의 漁場內에서 종래의 慣行에 의하여 그 어업을 행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水産業法 第40條 第1項의 入漁慣行에 관한 法規定을 共同漁業의 漁業權者에 대한 하나의 法的制限으로서, 종래부터 그 漁場에서 어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어업을 거절할 수 없는 관제를 漁業權者 쪽에서 入漁하는 것을 規制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入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法的 反射的作用’에 따른 것으로 직접 漁業權者와 入漁者 사이의 權利關係가 아니라고 하여 入漁慣行을 權利로 인정하지

않는다.²⁸⁾

둘째 入漁慣行을 權利로 보는 見解

이 見解에 따르면 우선 “入漁權이라 함은 종래의 慣行에 의하여 他人의 共同漁業權에 속하는 漁場에 入會 및 그 共同漁業權의 全部 또는 一部の 漁業을 행하는 權利다”라고 定義한다. 入漁權은 從來의 慣行에 따라 이룩된 慣習法上的 權利로서 漁業을 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入漁權은 慣行을 本質로 하고 있으며 入漁權을 慣習法上的 權利라고 본다면 民法 제 185 조가 인정하는 物權이다. 水產業法 제 24 조 제 2 항에 漁業權을 物權으로 인정한다는 明文上的 規定을 두고 있으니 入漁權은 物權이라는 표현은 비록 없지만 慣習法上的 物權이라는 해석이다.²⁹⁾

세째 濟州 出稼海女の 入漁慣行의 性格에 대한 行政解釋이나 司法解釋

그 解釋의 法理論的根據에 대해서는 見解가 구구하지만 이를 다음에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제주도 出稼海女라는 자격에서 入漁하는 경우에는 朝鮮漁業登錄規則 第 82 條 第 8 號의 규정에 따른 資格慣行者로 認定된다.³⁰⁾

② 入漁權은 漁業權者의 專用共同漁場에 입어할 權利가 있으며 이 權利는 漁業權名簿에 登錄되어 제 3 자에게 對항할 수 있는 效力이 있는 등 이는 漁業權者에 對한 一종의 權利의 性質이다.³¹⁾

③ 水產業法 제 40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慣行은 입어자에 對한 權利를 設定한 것이 아니고 漁業權者가 그 慣行行使의 反射的 作用에서 인정되는 制限性을 보일 뿐이다.³²⁾

④ 慣行에 따른 入漁權은 반드시 團體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個人으로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入漁慣行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入漁者가 사망하면 소멸된다³³⁾는 등이다.

무릇 法의 해석은 法이 규율하는 대상이 되는 社會的 事實關係의 經驗的 觀察을 토대로 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權利의 本質이라는 것도 概念論理的으로 解釋者의 머리속에서 組立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事實關係의 經驗的 觀察을 통하여 歸納的으로 꼬집어낸 一般的 法則 내지 論理的 命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곧 처음부터 權利의 本質을 概念的으로 推定하여 그것을 事實에 부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事實의 觀察로부터 출발하고 그 觀察의 結果를 論理的으로 구성하여 그를 토대로 權利의 性格을 確定하는 것이 法解釋의 올바른 태도라 하겠다.³⁴⁾

28) 諸吉雨 金容旭 共著; 「韓國水產業法要論」, p. 119~120.

29) 高翔龍; 앞의 논문, pp. 17~19.

30) 1956년 1월 13일 商工部長官에 따른 出稼海女の 入漁慣行權 裁定理由.

31) 1955년 8월 29일 (법무 제 140호), 入漁慣行權에 대한 質疑回答.

32) 1955년 8월 17일 (大高庶 제 234호), 入漁慣行權에 대한 質疑回答.

33) 1968년 9월 20일, 大邱地法의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請求訴訟에 대한 判決理由.

34) 渡邊洋三著; 「入會と法」, p.191 參照.

이러한 觀點에서 水産業法 제 40 조 제 1 항을 해석할 때 入漁慣行은 일종의 物權的 性質을 갖는 慣習法上的 權利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入漁慣行은 타인의 共同漁業權의 어장에 入漁하여 水産動植物을 채취 또는 채포하고 그 採取 採捕物을 排他的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權利는 他人의 權利의 客體인 漁場을 이용하여 收益을 얻는 權利이기 때문에 일종의 制限物權的 性質을 갖는 權利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權利의 本質 내지 性格이라는 것은 事實의 變化에 對應하여, 또한 事實關係에 대하는 사람들의 認識의 變化에 對應하여 變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연안의 어촌마을에 있어서의 入漁慣行도 社會的 經濟的 事情의 變化에 따라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現象은 마을마다 漁村契가 조직되고 共同漁場에 入漁할 수 있는 자를 漁村契의 契員과 準契員으로 한다는 制定的 法規에 따라 종래의 慣行에 따라 入漁했던 海女도 거의 99%가 漁村契의 契員 또는 準契員이 되어 입어하는 것이 事實關係로 됨에 따라 入漁慣行의 權利性에 대한 認識도 쇠박해져 가고 있다.

2. 入漁慣行의 變化

제주도연안의 共同漁場에서의 海女들의 入漁는 옛부터 내려오는 入漁慣行에 따라 裸潛漁業을 행하여 왔다. 곧 漁場의 境界線 策定, 漁場의 管理 및 處分, 入漁資格의 得失決定, 入漁의 時期와 方法, 入漁料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 漁場秩序 維持에 대한 規制는 國家法이나 行政官廳의 간여없이 마을자체의 鄉約이나 規約 등과 같은 不文律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러한 海女の 入漁慣行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入漁慣行은 1952년에 제정된 水産業法에도 반영되었다. 곧 同法 제 40 조 제 1 항에서 “共同漁業의 漁業權者는 종래의 慣行에 의하여 그 漁業場에서 입어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入漁慣行을 法에 依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곧 入漁慣行이 權利나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論難이 일었다. 또한 入漁慣行을 둘러싸고 제주도내의 어촌마을과 마을 사이에 紛糾한 入漁紛糾가 일어났을 뿐더러, 慶尙北道地方의 九龍浦·良浦·甘浦의 漁協과 제주도의 出嫁海女 사이에 入漁慣行의 문제를 놓고 行政관청에의 裁定申請,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請求訴訟까지 제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1962년 4월 1일, 水産業協同組合法과 同施行令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 1종 공동어업의 漁業權은 漁村契가 취득하게 되었고 共同漁場에 대한 規制도 종래의 慣行이 배제되어 水産關係法令이나 漁村契의 定款에 따라 規制되고 있다.

漁業의 近代化와 漁民의 權益保護를 위해서는 國家法에 따른 합리적인 規制가 絶실히 必要하다. 自給自足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날의 農漁村의 漁業도 산업의 발전에 따라

經濟的 交換價値를 지향하게 되어 간다. 이렇게 農漁村의 經濟形態가 변화함에 수반하여 農漁村의 共同體의 秩序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入漁慣行 역시 이러한 社會 經濟的 事情의 변모에 따라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V. 要 約

(1) 2萬數千에 이르는 濟州 海女는 世界的 存在다. 이 세상에는 韓國과 日本에만 海女가 있는데, 海女の 本據地는 濟州도다. 海女들은 근래 激減되어 가므로 海女에 대한 調查 研究는 屢 시급하지만 아직 큰 進展이 없다.

(2.1) 海女들은 漁場을 물에 있는 밭의 延長으로 觀念한다. 漁場을 밭과 꼭 같은 生計를 위한 作業道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海女들은 바다를 마치 집안처럼 친숙하게 여긴다. 第1種共同漁場이라고도 하는 海女漁場은 마을단위로 나누어지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동네마다 나누어지기도 한다.

(2.2) 원래 海女들의 入漁는 國家法이나 行政官廳의 간여없이 慣行에 따라 이루어져 오다가 1962년부터 水産業協同組合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漁村契가 어촌부락단위로 조직되고 共同漁業權을 행사하고 있다. 海女들의 入漁權, 入漁時期, 採取物 採取, 收益 分配方法 등에 따른 統制는 漚嫂會(海女會)가 맡고 있다.

(3.1) 濟州도내의 漁場紛糾는 마을과 마을 사이(혹은 동네와 동네 사이)의 漁場區劃에 대한 紛爭이 대부분이다. 필자들은 다음의 다섯마을을 대상으로 入漁慣行과 그 紛糾를 조사했는데 A,B,C는 그 분류가 심했던 마을이다.

- A.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 B.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
- C.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섬)
- D. 北濟州郡 涯月邑 涯月里
- E.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위 A,B,C 마을을 통한 紛糾의 공통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漁場紛糾의 發生은 社會經濟事情의 變化에 따라 종래의 共同體의 秩序意識이 무너지 가는 한 斷面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예전에 비하여 海藻類의 商品價値性이 드높아져 감에 따라 排他的 利權意識이 일어 漁場紛糾가 激甚해졌었다. 근래 이르러서는 미역의 價格이 暴落하고 正確한 漁場圖에 따른 入漁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류는 거의 사라졌다.

셋째 그 漁場紛糾의 실마리는 대체로 從來의 慣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漁場區劃線을 劃定했거나, 共同入漁區域의 分割을 원만한 合意없이 이루었다는 데 있었다.

(3.2) 제주도 해녀들은 約百年前부터 韓半島 各沿海는 물론이요, 日本, 中國, 러시아까지 出稼했다. 그들의 權益을 위해 1956년에는 가장 많은 해녀가 나갔던 慶尙北道 九龍浦·良浦·大浦 三箇水協 共同漁場에 제주도 해녀 1,070 명이 入漁할 수 있는 入漁慣行權을 制定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權益收奪은 根絶되지 않음으로써 항상 말썽이 뒤따랐으며 드디어 1967년 慶尙北道側에서는 慶北裁定地區에 出稼하는 제주 해녀들에 대한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請求訴訟’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訴訟事件은 큰 波紋을 던지면서 이어졌거니와 그 동안에도 줄곧 海女出稼는 계속되어 갔다.

(4.1) 海女の 入漁慣行은 權利이나, 또는 法の 反射的 作用이나를 두고 많은 論難이 거듭되어 왔다. 入漁慣行은 일종의 物權的 權利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海女들의 入漁慣行도 나날이 變化하는 社會經濟的 事情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다.

(5.1) 근래 이르러 도내에서의 慣行入漁는 사실상 보호 받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은 法的 是非는 거의 없다. 다만 아직도 韓半島에는 제주 해녀들이 出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權益保護는 遼遠한 실정이므로 水産業法이 改正돼야 하는 등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5.2) 出稼海女에 대한 客主나 現住民의 收奪을 방지하기 위하여 出稼海女の 慣行入漁에 따르는 諸般義務를 法令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共同漁場에의 潛水器船 侵入을 철저히 規制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urvey of the Troubles over Women Divers' Fishing Grounds: Their Fishing Practice and Its Characteristics

Doo-hee Kim, Young-don Kim

Twenty five thousand odd women divers in Jeju Island arouse worldwide interest. Only two nations, Korea and Japan, have women divers in the world, but their base of operations is Jeju Island. Because the young girls in Jeju Island don't want to become women divers any more, the number of women divers grow smaller and smaller day by day. Therefore, the analysis and research on women divers' problems must be conducted without delay.

Women divers look upon fishing grounds as the extension of a field on the land. And they think fishing grounds to be working places only for their livelihood so that they regard the sea as their intimate home. Women divers' fishing grounds are divided according to units of local communities, or in some other cases according to those of neighborhood.

By nature, women divers' fishing had been done according to the habitual practice without the assistance of government or laws, have been constituted as a unit of each fishing village and have exercised their common fishing rights since 1962. The local fishermen's association and the divers' group (women divers' association-) jointly take charge of the fishery rights, the regulation of the fishing season, harvest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method of division of these products, etc.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have resulted in those over the divisions of fishing grounds among local communities, or villages. We investigators, inquired the habitual fishing practices and the complications. Villages, A, B and C, are the ones in which the serious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have aroused and villages, D and C, are the ones where such troubles have never been broken out.

- A. Youngsu Ri, Hankyeong Meon, Bukjeju Gun.
- B. Jongdal Ri, Gujwa Eub, Bukjeju Gun.
- C. Yeongpyeong Ri, Gujwa Eub, Bukjeju Gun.
- D. Aeweol Ri, Aeweol Eub, Bukjeju Gun.
- D. Bukchon Ri, Jocheon Meon, Bukjeju Gun.

The common issues of such troubles in the case of above A, B and C villages are as follows:

First, the outbreak of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can be considered as the breakdown of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order, caused by the change of the conditions of social economy.

Second, as the commercial value of marine plants had been going up, the consciousnes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had become very strong so that the troubles had become acute. Recently most of the troubles have disappeared because the price of brown seaweeds has declined heavily and fishing had been done abiding by the correct boundaries of fishing grounds.

Third, the immediate cause of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was that the boundary lines had been demarcated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of habitual practice heretofore, or that the division of common fishing areas had been made without satisfactory agreement.

Women divers in Jeju Do had done fishing at the coasts of Japan, China and Russia, not to mention at the coast along the Korean penninsular. One thousand and seventy women divers in Jeju Island were given the legal right to fishing in common fishing grounds under the control of the following three fishery cooperations: Kuryongpo, Yangpo and Daebo in Kyungsang Pukto, where the more women divers of Jeju Island did their fishing in 1956 than any other time.

But many problems about their rights and interests has taken place. Therefore, the government of Kyungsang Puk Do took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existing habitual practice of the fishing rights in 1967. It created a great stir for a long time.

It is reasonable to regard women divers' fishing habitual practice as a kind of the real right *jus in rem*. But even this habitual practice must be changed as the conditions of the social economy are changing day by day.

Recently they received the proper protection in the case of the habitual fishing practice in Jeju Do. Consequently, there are few legal disputes. But even thesedays, women divers in Jeju Island go and do fish along the coast of Kyungsang Puk Do, etc; therefore, their rights and interests must be protected perfectly. And a permanent counterplan and legislative system must be divided in order to thoroughly prohibit fleets equipped with diving apparatus from frequenting common fishing grounds.